

	교원 징계 업무	문서번호	BIST-VA-020
		주관부서	총무팀
		일 자	2018. 5. 1

가. 목적

- 교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면 법인에 교원징계와 관련한 사유를 보고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업무

나.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 학교법인 중앙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다. 업무 흐름도

업무흐름도	업무시기 연중 발생 시	업무처리방법 및 관련서식
1. 사유발생 ↓ 2. 진상조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부 (대학, 대학-위원회) ↓ 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결과보고 (위원회-대학) ↓ 4. 징계요구 제청 (대학-법인) ↓ 5. 법인 이사회 징계 안건 상정 및 징계위원 선임 (법인) ↓ 6. 징계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회의 (법인-위원회, 위원회) ↓ 7. 징계 의결 (위원회) ↓ 8. 징계결정 통보 (법인-대상자-대학) ↓ 9. 인사자료 정리		

라. 업무 내용

1.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진상조사 및 관련 교원의 진술서 제출 의뢰
2. 진상조사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및 결과에 따른 범인 제청
4. 범인은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
5. 징계위원회 소집
6. 징계위원회에서 징상조사 및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심리
7.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정
8. 임명권자 보고 후 되면 대학과 징계 협의자에게 결과 통보
9. 징계 의결 결정이 임면에 관한 내용일 경우 임면 제청

마.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대학으로 사실조사 및 확인을 위한 출석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